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5의3] <개정 2011.4.8>

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
총 무 과	서무·인사·관인과 도서의 관수·문서·연금·기획·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행 정 과	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·심판의 참여·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
※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행정법원 사무국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민사합의과 또는 민사과에서 관장한다.	